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6년 9월호

월간 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M&A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울회계법인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기업의 M&A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하고자 합니다.

8 월호

- M&A의 방법: (1) 합병
- M&A의 방법: (2) 분할

9 월호

- M&A의 방법: (3) 자산 및 영업양수도
- M&A의 방법: (4) 주식교환 및 이전

세무정보

- 2016 세법 개정안 세부내용 - 기획재정부 (2016.07.28)
-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M&A의 방법: (3) 자산 및 영업양수도
■ 자산 양수도

자산 양수도는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과 같은 개별적인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거래이며, 영업 양수도는 독립된 특정사업 부문의 자산·부채, 권리·의무, 인력·조직 등 사업부문의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임. 경상적인 양수도는 회사의 일상적 거래로 법률상 특별한 제한 없이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중요한 양수도의 경우 법적 절차 등이 요구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중요한 양수도의 정의
(1) 중요한 양수도

중요한 자산 양수도는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임. 중요한 영업 양수도는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이상인 경우
- 양수도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중요한 자산 양수도 및 중요한 영업양수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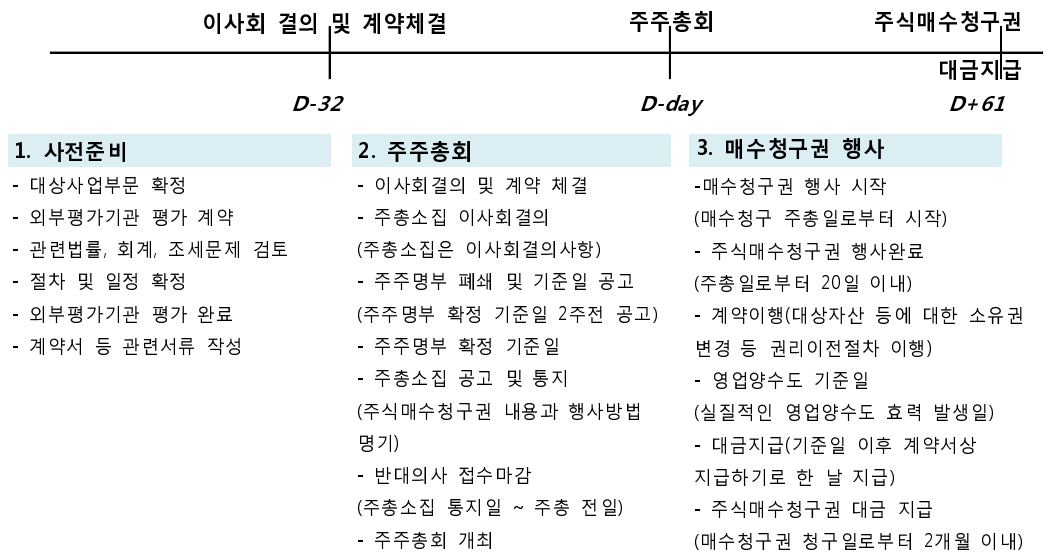
구분	중요한 자산 양수도	중요한 영업 양수도
주총승인	불필요(이사회 결의) (상법 제 393 조)	주총 특별결의(상법 제 374 조)
주식매수청구	불인정	인정(상법 제 374 조의 2)
주요사항보고	제출	제출
외부평가	필요	필요
종료보고	금융위 제출	금융위 제출

중요한 영업 양수도의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산 양수도의 경우 특별한 이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절차 및 특징
(2) 절차 및 특징

비상장법인의 중요한 자산 양수도는 상법상 이행규정이 없고 자본시장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산 양수도 가액의 평가, 이사회결의, 계약체결, 기준일 설정, 대금 결제 등의 절차에 의하여 거래가 종결됨. 비상장법인의 중요한 영업 양수도는 상법상 규정된 주주총회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등 법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본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등기 절차가 불필요함. 또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이전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수취하게 되어 실질적인 순자산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도 불필요함.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 양수도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절차에 법정공시 및 신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주요 사항보고서 및 종료 보고서 제출 절차가 추가됨.



기타고려사항

자산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 개별적인 자산의 매각을 준용한 세무검토가 이루어진 후 포괄적인 승계에 따른 세무검토도 요구됨.

- Tax Issue

구분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법인세법	양수도가격	시가대비 고가양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1)	시가대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1)
	자산양도차익	-	법인세 과세
	감가상각	중고자산 내용연수 50% 범위 내 신고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 29 조의 2)	-
부가세법	과세대상 여부	-	포괄적 사업양수도일 경우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3 조)
	사업등록 변경	정정	정정
증권거래세		-	-(*2)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 납세의무 발생	-

(*1) 고가양수, 저가양도의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2) 유가증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음(증권거래세법 제2조)

상장법인의 영업 또는 자산 양수도 가액의 산정방법은 합병과 달리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주요 사항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거래가격 및 자산평가 시 부실평가로 인한 상장법인의 재무구조 악화와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3) 제한규정
상법상 제한규정

상법상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며, 영업양수인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2년간 변제할 책임이 있음.

자본시장법상 제한규정

자본시장법상 거래자가 상장법인인 경우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내용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자본시장법 제 161 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를 결의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4 제 2 항)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 양수도시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출
합병 등 종료보고서 제출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를 사실상 종료한 때 금융위에 합병 등 종료보고서 제출
우회상장 제한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8 조)	우회상장으로 인한 경영권 변경 시 지분매각 제한, 우회상장요건 위반 시 상장폐지
주된 영업부문 양도시 상장폐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8 조)	상장법인이 영업양도에 의하여 주된 영업이 매각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사유가 적용되어 상장이 폐지됨

간이 영업양수도

(4) 간이 영업양수도에 관한 규정

2015년 개정상법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등 상법 제37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상법 제374조의3).

M&A의 방법: (4) 주식교환 및 이전
■ 주식교환 및 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정의**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2)

존립 중인 회사 A에 다른 회사 B의 주주가 가지는 B주식을 모두 주식 교환에 의하여 이전하고, B사의 주주는 그 대가로 A사의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A사가 B사의 100% 완전모회사가 되는 것을 말함.

일반적 절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 ①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 → ②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 → ③ 주식교환 계약서 작성 → ④ 주식 교환, 이전 신고서 제출 → ⑤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공고(기준일2주전) → ⑥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주총 2주 전) → ⑦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특별결의) → ⑧ 주식교환(주총 승인 후 1월 이상 경과)

주식매수청구권행사는 반대의사표시를 이사회 결의부터 주주총회 이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해야 함(상법 제360조의5).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반대의사표시를 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한편 채권자 보호절차와 등기는 필요 없음.

- 소규모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 10) : 종래 완전모회사 A가 되는 회사의 주주 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을 갈음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하인 경우에 가능함. 그러나 2015년 개정상법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 가능한 소규모주식교환의 범위를 소규모 합병의 요건과 동일하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로 하고, 주식 이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때에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로 확대함.
- 간이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 9)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B의 총 주주의 동의 또는 완전모회사 A가 되는 회사가 B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 소유하는 경우 B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소화된 주식교환(간이합병과 유사함)을 말함.

(2) 주식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정의**

존립 중인 회사 A는 A사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 B를 설립하고 A사의 주주는 B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B사는 A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100%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A사는 B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을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라 함.

주식이전과 주식교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주식이전과 주식
교환의 차이점**

구분	주식 이전	주식 교환
완전모회사 형태	신규로 설립될 회사	기 설립된 회사
간이 또는 소규모 제도	불인정	인정
교부주식내용	신주만 가능	신주 또는 구주(자기주식) 가능
효력발생시기	완전모회사 설립등기 시 효력발생	등기와 무관하게 교환기일에 효력발생
등기	완전모회사 설립등기	완전모회사 자본변경 등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제한규정
상법 및 공정거
**래법상 제한 규
정**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한도 (상법 제 360 조의 7)	부실한 자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모회사 자산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모회사 자본금은 완전자회사순자산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과 신주발행에 같음하여 자사주를 지급하는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음.
상호주 보유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주식교환 전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교환 후에는 상호 주식을 보유한 결과가 되므로,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완전모회사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2 조)	기업결합에 해당될 경우 매출액 2 천억원 이상은 사후신고를, 매출액 2 조원 이상은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회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

**상장법인 제한규
정**

상장법인이 포함된 경우 자본시장법 및 감독규정에 의한 제한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주요 신고사항	주요 사항 보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 161 조), 증권신고서 등 제출
주요 신고사항에 대한 벌칙	손해배상책임, 금융위의 조사 및 조치, 형사적 책임
교환비율 외부기관 평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시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우회상장 제한규정	우회상장 기준 위반시 상장폐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8 조), 우회상장시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교환신주 매각 제한

삼각주식교환**(4) 삼각주식교환제도의 도입(상법 제360조의3)**

2015년 개정상법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다만 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과 같이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가 주식 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세무자문본부

02-316-6600

세 무 정 보
2016 세법 개정안 세부 내용 - 기획재정부 (2016.07.28)

■ 지난 8월호에서 세법 개정안의 요약을 게재한 것에 이어 금월호에서는 주요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게재합니다.

I.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 (조특법 §10, 조특령 별표 7.8)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신성장동력) ○ 12개 분야* 75개 기술 *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등 (원천기술) ○ 17개 분야* 50개 기술 *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자원, 전력, 원자력 등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조정, 확대 *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등 11개 신산업 분야 해당 세부기술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중소기업 30% ○ 중견·대기업 20%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인상 ○ (좌 등) ○ 최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액 비중 × 일정배수*)] *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

- (대상기술)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율)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 7.8)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 신약 분야 (바이오신약) 후보물질발굴 기술 (화합물신약) 후보물질발굴 기술 및 임상 1,2 상 시험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기술 확대 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 -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 희귀질환 의약품은 국내외 모두 적용

<개정이유> 신약 개발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추 가>	<input type="checkbox"/>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좌 동) ○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내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 다만, 위탁연구개발의 경우(임상 1.2 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 제외) 국내 비영리법인 및 국내기업의 연구기관에 한정 ○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위탁·공동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의 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p> <p>○(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 8%, 대기업: 7%</p> <p>○(대상 시설투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p> <p>*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p> <p>○(공제요건) ① + ②</p> <p>① 전체 R&D 비중이 매출액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등이 일정요건* 충족</p> <p>* 시행령에서 규정</p> <p>②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p> <p>* 중소기업의 경우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감소인원 1 인당 1,000 만원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p> <p>○(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p> <p>○(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감소) 공제연도 이후 2 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1 인당 1,000 만원씩 추정* *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 (다른 목적에 전용) 투자 완료일부터 3 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시 세액공제 상당액 추정 <p>○적용기한 : '18.12.31.</p> <p>※ 현행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조특법 §11②3 호)」를 동 제도로 일원화</p>

<개정이유>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 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공제비용)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 (배우출연료 한도) 편당 국내제작비용 합계의 30%를 한도로 공제 - (제외비용) 홍보비 등 간접비용, 해외제작비*, 정부 지원액 등 *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콘텐츠는 전체 제작비를 제외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공제시기) 방송·영화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II.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20, §23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대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input type="checkbox"/>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중견 기업 업종범위 <input type="checkbox"/>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input type="checkbox"/> 업종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Negative 방식) <input type="checkbox"/>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 (Negative 방식) <input type="checkbox"/> 업종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Negative 방식)

<개정이유> 서비스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26①, §144③)

현 행	개 정 안																																																				
<p>□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p> <p>○(공제액) ① + ②</p> <p>① (기본공제액) 투자금액× 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제외) -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p style="font-size: small;">*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 차감</p> <p>② (추가공제액) 투자금액× 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액: 고용증가인원 × 1인당 1~2천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이스터고 등 졸업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 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년·장애인·60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 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 상시근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 만원</td> </tr> </table> <p style="margin-top: 20px;">○(공제율) 기업규모·투자지역에 따라 차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대기업</th> <th colspan="2">중견기업</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수도권</th> <th>지방</th> <th>수도권</th> <th>지방</th>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기본공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고용감소시 배제</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고용감소시 에도 허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17.12.31.</p>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 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 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 만원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고용감소시 에도 허용		추가	3%	4%	4%	5%	4%	5%	공제	서비스	4%	5%	5%	6%	6%	<p>□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원 상향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이스터고 등 졸업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 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년·장애인·60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 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 상시근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 만원</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좌 동)</p>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 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 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 만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 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 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 만원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고용감소시 에도 허용																																																
추가	3%	4%	4%	5%	4%	5%																																															
공제	서비스	4%	5%	5%	6%	6%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 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 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 만원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 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 15.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1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 16.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 지원

III. 기업구조조정 지원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법인법 §47③, §47의 2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사유 *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승계받은 사업을 3년 이내 폐지 <input type="checkbox"/>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 * 지분연속성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한 없이 적용 중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부담 완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3년 이내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

<개정이유> 구조조정 이후 사후관리 부담 완화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목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법인령 §84, §84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격목적분할·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승계한 자산 처분시 과세이연 금액 추정 <input type="checkbox"/> 주식·자산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경우는 계속 과세이연 <input type="checkbox"/> 목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목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간 최초 적격합병 - 목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 목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등 <input type="checkbox"/>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 피출자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최초로 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 ①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완전자회사 ②피출자법인은 승계받은 사업 계속 ③출자법인은 주식 처분 사실 없을 것 ④현물출자 후 3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목적분할·현물출자 후 모든 유형의 최초 적격 구조조정*시에도 과세이연 *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교환 등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적격 구조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법인규칙 §41⑥)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분할시 주식이 포함되는 경우 과세이연 혜택 배제 <input type="checkbox"/> 다만, 다음의 주식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함께 승계 가능 ○ 분할사업부문이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유하는 주식 ○ 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추 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승계가능한 주식범위 확대 ○ (좌 동) ○ 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분할사업 부문과 동일업종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적용 요건 ① 동일업종 법인은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아닐 것 *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등 ② 동일업종 법인의 주식가액이 전체 분할자산(주식 포함)의 30% 이하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법인령 §156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의무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자산·부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 ○ 구분경리 예외 - 중소기업간 합병 -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법인간 합병	○ (좌 동) - (좌 동) -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법인간 합병

<개정이유> 합병 후 구분경리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V.역외세원 확보
■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국조법 §11, 국조령 §21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개별기업보고서 <input type="checkbox"/> 통합기업보고서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국가별보고서 추가 (좌 동) <input type="checkbox"/> 국가별보고서 - (제출대상자)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으로서 ·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 기업(OECD 권고) - (제출대상자 특례) 일정한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에게 제출의무 부여 *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등 - (작성내용)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등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모회사 사업연도말로부터 12개월 이내

<개정이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 및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IV. 납세자 권익 보호
■ 가산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81, 법인세법 §76, 부가세법 §6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주식액면가액의 2%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율 인하 ○ 주식액면가액의 1%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지급금액의 2% (지연제출시 1%)	<input type="checkbox"/>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input type="checkbox"/>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지연제출시 0.5%)	<input type="checkbox"/> 공급가액의 0.5% (지연제출시 0.3%)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input type="checkbox"/> 공급가액의 0.5%

<개정이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적용시기>

- (법인세·소득세)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이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부여(내진설계 대수선시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2) 미세먼지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한 후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50%(최대 100만원)를 감면(2017.1.1.~2017.6.30.까지 6개월간 시행)
- 3)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혜택을 새롭게 신설하여 친환경차량 확대 보급을 지원
- 4) 판결이나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요건(2개월 ~ 6개월 신고시 20% 감면)도 추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증정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증정 상품권은 통상 공급 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당해 물품 공급 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물품 구입(2차 거래) 시에 공급 대가로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 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정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6광1841,2016.06.24)
- 국제마케팅비가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가 독일 ○○○○와 원고 등 각국 현지법인들이 함께 전세계적인 마케팅활동의 주체가 되면서 다만 집행만 독일 ○○○○가 전담하여 수행하고 원고 등이 그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상표권자인 독일 ○○○○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대법2015두52098, 2016.08.30)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	--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